

忠清北道住宅建設에 대한道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

檢 討 報 告

1. 提出者 : 忠清北道知事

2. 提出日字 및 回附日字

가. 提出日字 : 1992年 7月 18 日

나. 回附日字 : 1992年 7月 19 日

3. 提案理由

- 住宅組合이 그 構成員의 住宅을 建設하기 爲하여 取得하는 組合 住宅用 不動產에 對하여 地方稅를 免除하여 증으로써 組合住宅의 建設 및 供給을 圓滑히 遂行할 수 있도록 支援하기 爲함.

4. 主要骨子

가. 免除對象 : 住宅組合이 그 構成員의 住宅을 建設하기 爲하여 取得하는 組合住宅用 不動產 (案 3條 2項)

나. 免除稅目 : 取得稅, 登錄稅 (案 3條 2項)

5. 檢討意見

《 報告者 : 專門委員 李 清 》

忠清北道住宅建設에 對한 道稅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
改正條例案을 檢討한바,

住宅組合 및 組合住宅은 住宅이 없는 住民의 住居生活 安定 및 住居
水準의 向上을 圖謀코져,

組合을 構成하여 그 構成員의 住宅을 建設코져 하는 것으로 地方稅法
第7條 및 第9條, 住宅建設 促進法 第44條에 根據하여 住宅建設에 對한

道稅課稅 免除 및 不均一 課稅에 關한 條例를 改正하여 組合住宅의
建設 및 供給을 圓滑히 支援하기 爲한 것으로서,

改正內容의 主要骨子는 組合住宅 및 組合住宅用 不動產의 範圍, 組合
住宅에서 取得하는 物件에 對한 取得稅 및 登錄稅의 免除規程을 新設

하고 一部 字句를 插入 및 修正하는 것으로서 本 改正 條例案은 妥當
한 것으로 思料됨.